

# 정기안전점검보고서

(사업장용)

사업장명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점검일자	2025년 11월 10일

결 재			

본 보고서는 산업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고용노동부 예규(제2024-231호)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서명과 사업주의 결재를 득하고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사업장 개요

근로자현황		재해발생현황						
계	55명	연도	근로자수	재해자수			재해율(%)	
				계	사망	부상		직업병
사무직	0명	전년도	51명	0	0	0	0	0.00
사무직외	55명	당해년도	55명	0	0	0	0	0.00

## ○ 점검현황 및 기술지도 사항

### 【관리 및 작업장 등】

- 안전보건관리체제등(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선임, 관리감독자의 역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관리, 게시
-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
-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의 게시 등
- 위험성평가 실시(최초평가, 수시평가, 정기평가)
- 안전표지, 작업표준 및 안전수칙 등의 게시 및 준수
-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 산업재해발생보고 및 통계의 유지·관리
-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 유해·위험기계 등 안전검사,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신고
- 폭발·화재 및 위험물 누출에 의한 위험방지
- 중량물 취급시의 위험방지, 보호구의 착용
- 작업시작전 점검 및 비정형작업에 따른 위험방지
- 작업장, 통로, 계단 및 정리정돈 상태
-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끼임재해 예방 등)

### ◎ 관리감독자 중심 안전보건관리

광주광역시 관광공사내 관리감독자 중심 안전보건관리를 수행하여 안전한 작업장을 조성하시기 바랍니다.

\* 유해위험요인 파악 후 안전보건 조치사항 결정

- 관리감독자 및 현장 작업자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부서 전체의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여 리스트 작성
- 유해·위험요인이 누락된 것은 없는지 확인(3대 사고 유형과 8대 위험요인 누락여부)
- 유해·위험요인은 주요 공정별로 구분되어 있는지 확인
- 발굴한 유해·위험요인에 대하여 적절한 안전보건조치 마련
- 안전보건 조치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

\* 관리감독자 역할 부여 및 수행지원

- 관리감독자는 유해·위험요인을 실제 지휘·감독하는자로 지정했는지 확인
- 안전보건조치별 관리감독자 업무 분장(역할) 확인
- 업무분장과 실제 수행업무 동일 여부
- 관리감독자는 자신의 안전보건조치 업무 숙지 여부
- 발굴한 안전보건조치 개선 필요내용에 대한 지원여부

\* 관리감독자 역할 수행에 대한 확인·평가

- 부서장이 관리감독자 수행업무 확인 여부
- 부서장은 관리감독자 업무 수행에 대해 수시 점검 및 평가 여부
- 부서장은 상위관리자 등에게 관리감독자 업무수행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보고
- 부서장은 확인된 안전보건조치 필요사항에 대하여 보고 및 조치방안 강구

**【위험성 평가기준】**

구분	중대성(강도)			위험성 수준	관리기준	내용	
	③	②	①				
가능성 (빈도)	③	9(높음)	6(높음)	3(보통)	6~9(높음)	즉시개선	작업을 지속하려면 즉시 개선이 필요한 상태
	②	6(높음)	4(보통)	2(낮음)	3~4(보통)	개선	안전보건대책을 수립하여 개선이 필요한 상태
	①	3(보통)	2(낮음)	1(낮음)	1~2(낮음)	현상유지	근로자에게 유해·위험 정보제공 및 교육 등이 필요한 상태

※개선 후 중대성의 크기가 변하지 않는 “3”인 경우 현상유지 가능

**가능성(빈도)**

- ③ 일반적 또는 반복적으로 발생
- ② 발생 가능성 있음
- ① 발생 가능성 거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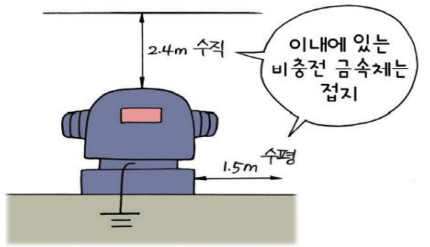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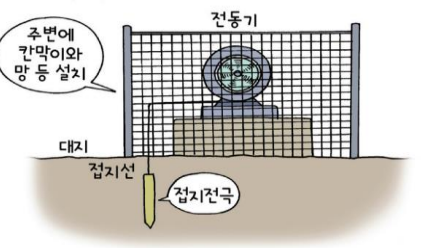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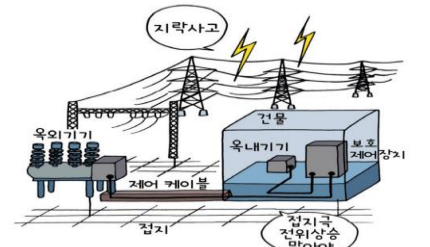
**중대성(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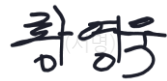


- ③ 사망·중대한 상해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직업성 질병 초래 위험
- ② 의학적인 치료를 요하는 상해 또는 장애를 일으키는 질병
- ① 아차사고, 무상해, 응급조치를 요하는 상해 또는 질병 초래 위험

구분 (공정·설비·장소 등)	유해·위험요인	현재 안전조치	현재 위험성 추정 및 결정 (가능성x중대성)	위험성 감소대책	개선후 위험성 추정 및 결정 (가능성x중대성)
관리사무소	분전반(LE-P)내 배선용차단기 단자접속부 일부 노출상태로 근로자 부주의로 신체 접촉에 의한 감전사고 발생위험	절연방호고, 경고표 지	6(높음) 2X3	-충전부를 방호할 수 있는 절연방호구 보완설치 -손에 물기가 묻어있는 상태에서 조작등 금지토록 관리	3(보통) 1X3
관리사무소	분전반 전면에 물품등을 적재중으로 비상시 대처 미흡에 의한 감전사고시 중대재해 발생위험	경고표지	6(높음) 2X3	-분전반 전면에 물품등의 보관금지(하부에 보관금지 표지등 부착) -점검등 작업시 70cm이상 작업공간 확보	3(보통) 1X3
방재실	책상 하부의 먼지 과다퇴적상태로 콘센트등 전기기구의 스파크 발생시 착화에 의한 화재발생위험	청소실시	4(보통) 2X2	-정기적으로 청소작업을 실시하여 먼지등이 퇴적하지 않도록 관리바람 -콘센트는 책상측면에 견고하게 고정하여 사용	2(낮음) 1X2
방제실	휴게실 전기장판 전원의 미 차단 상태로 과열에 의한 화재발생위험	교육실시	4(보통) 2X2	-전기장판 사용후 전원을 차단할 수 있도록 주지교육 및 관리감독 실시 -과열방지기능이 내장된 전기장판 사용	2(낮음) 1X2
컨벤션동	1층 출입구(GATE7)앞 벽면 콘센트의 접지 미실시상태로 전기기구 전원접속사용중 누설전류 발생시 감전사고 위험	접지형 콘센트이	6(높음) 2X3	-콘센트에 접지 실시후 안전하게 사용(접지선을 접속기구 접지극에 접속할것).전원은 누전차단기에서 인출하여 사용	3(보통) 1X3
제공자료 및 기타사항	교육교안(보호구의종류와관리방법)				

점검자	대한산업안전협회 광주지역본부	황영욱	황영욱	사업장 확인	유승기	유승기
-----	--------------------	-----	-----	--------	-----	-----

# 안전점검보고서 별지

점검현황 및 기술지도사항	점검사진
<p>안전보건규칙 제302조(전기 기계·기구의 접지)</p> <p>①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에 대하여 접지를 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li> <li>2. 고정 설치되거나 고정배선에 접속된 전기기계·기구의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 중 충전될 우려가 있는 비충전 금속체</li> </ol> <p>가. 지면이나 접지된 금속체로부터 수직거리 2.4m, 수평거리 1.5m 이내인 것                  나. 물기 또는 습기가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것                  다. 금속으로 되어 있는 기기접지용 전선의 피복·외장 또는배선관 등                  라. 사용전압150V 넘는 것</p>	
<p>3.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설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속체</p> <p>가. 전동식 양중기의 프레임과 궤도                  나. 전선이 붙어 있는 비전동식 양중기의 프레임                  다. 고압(1.5천볼트 초과 7천볼트 이하의 직류전압 또는 1천볼트 초과 7천볼트 이하의 교류전압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 주변의 금속제 칸막이·망 및 이와 유사한 장치</p>	
<p>4.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p> <p>가. 사용전압이 대지전압 150볼트를 넘는 것                  나. 냉장고·세탁기·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과 같은 고정형 전기기계·기구                  다. 고정형·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동기계·기구                  라. 물 또는 도전성(導電性)이 높은 곳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 비접지형 콘센트                  마. 휴대형 손전등                  5. 수중펌프를 금속제 물탱크 등의 내부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탱크(이 경우 탱크를 수중펌프의 접지선과 접속하여야 한다)</p>	
<p>②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적용되는 이중절연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으로 보호되는 구조로 된 전기기계·기구</li> <li>2. 절연대 위 등과 같이 감전 위험이 없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li> <li>3. 비접지방식의 전로(그 전기기계·기구의 전원측의 전로에 설치한 절연변압기의 2차 전압이 300볼트 이하, 정격용량이 3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이고 그 절연전압기의 부하측의 전로가 접지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에 접속하여 사용되는 전기기계·기구</li> </ol>	
<p>③ 사업주는 특별고압(7천볼트를 초과하는 직류류 전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기를 취급하는 변전소·개폐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지락(地絡)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접지극의 전위상승에 의한 감전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④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접지설비에 대하여 항상 적정상태가 유지되는지를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보수하거나 재설치하여야 한다.</p>	

2025년 11월 10일	황영욱 	사업장 확인  
---------------	---	--